

목록

우리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2022.11.28)..... 1  
우리은행 거치식예금약관..... 9  
우리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2022.12.02)..... 11

#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 제2조(실명거래)

-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표·어음 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다.

##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입 금)

-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증권의 부도)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할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 제9조(이 자)

-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 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 제9조의2(휴면예금 및 출연)

-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0조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 제10조(지급·해지청구)

- ① 거래처가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 ①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은행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 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⑤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⑥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 ⑦ 은행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고객확인 및 검증 등)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한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된다.

### 1. 개인

항 목	정 보	자 료
신원 정보	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 연락처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행정정보문서(주민등록등본 등)
직장 정보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직장정보 문서(재직증명서 등)
추가 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재산현황 등	추가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부동산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다.

## 2. 법인(단체)

항 목	정 보	자 료
신원 정보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업종, 설립목적, 실제 소유자(주요 주주 및 임원) 정보 등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대표자 신원정보문서, 법인(단체) 확인문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 주주명부
추가 정보	회사 경영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기부관련 정보 등	기타 추가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각종 인허가서 등)

-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임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종료된다.
- ③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국제 사회 또는 해외지점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된다.

### 제13조(지급시기)

-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 ②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 제14조(양도 및 질권설정)

-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 제15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한다.
-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

### 제16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5조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면책)

-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 ④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거래처가 제15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9조(수수료)

-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20조(오류처리 등)

-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21조(예금의 비밀보장)

-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2조(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거래통장에 표기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애플리케이션 등)에 의한 통지
- ③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 ④ 제3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23조(약관적용의 순서)

-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 제24조(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 제25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6조(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거치식예금약관

## 제 1 조 적용범위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복리자유적립식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 제 2 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조 이 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④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제 4 조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① 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변경일 이후 이율은 변경일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전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제 5 조 만기앞당김 지급

① 계약일 당시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일 전 1개월 안에 예금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초 약정한 만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시 적용되는 이율은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입금일 당시의 약정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파생관련 예금은 예외로 한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한다.

###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이다.

### 제3조 계약기간

- ①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한다.
- ②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③ 디폴트옵션 정기예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

### 제3조의2 만기처리방법

- 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만기 시,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한다.
  2. 최초 신규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 재예치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자동 재예치 이메일통지'를 신청한 예금주에게는 만기일(자동 재예치일) 1개월 전에 자동 재예치됨을 이메일로 안내한다.
  3.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우 사업자가 신규시 지정한 상품으로 재예치하고, 신규시 지정한 상품이 없을 경우 원 계약일 수만큼 동일상품으로 재예치한다.
- ②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된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한다.

##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우, 해당 정기예금의 계약기간 이내에 포함되는 최장기 기간별 고시금리를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한다. 해당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이율을 해당일의 이율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한다.

## 제6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 일시 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한다.

## 제7조 중도해지

① 중도해지시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단, 9호, 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율을 적용한다.)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8.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
9. 수수료의 징수
10.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③ 예금 만기이전의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한다. 단, 제2항 제9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가산금리 포함)을 적용한다.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계약기간 1년 이하 : 기간별 약정금리
- 계약기간 2년 :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계약기간 3년 :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계약기간 5년 :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3년 이상 예치시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계약기간 2년 미만 : 기간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단, 6개월 미만은 3개월,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6개월, 9개월 이상 1년 미만은 9개월,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 계약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3.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④ 거치식예금 약관 제5조의 "만기앞당김 지급"은 적용을 배제한다.

### 제8조 분할지급

① 이 예금은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③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한다.

### 제9조 기 타

-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하다.
- ②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한다.

#### [변경사항]

구분	변경일	내 용	관련조항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1차	2005.12.30	제정	-	-
2차	2006.11.20.	계약기간 추가, 용어 변경	제3,5조	적용
3차	2011.11.16.	자동재예치 조항 변경	제3,5,6,7,8조	미적용
4차	2013.11.15.	재예치사실 고객통지 명확화, 이자율 확인방법 명확화	제3,5,7조	미적용
5차	2014.06.30.	만기지정식 정기예금의 만기시 자동재예치 조항 및 적용이율 변경,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해지시 특별중도해지이율 지급, 특별중도해지이율 명확화	제3,5,7조	적용
6차	2015.04.01.	특별중도해지사유 명확화	제7조	적용
7차	2016.09.16.	만기앞당김지급 적용 배제, 용어 명확화	제7조	미적용
8차	2018.10.30.	중도해지이율 관련 내용 명확화	제7조	미적용
9차	2022.12.02	디폴트옵션 추가, 만기처리방식 제도별 명확화, 특별중도해지사유 추가, 분할지급방식 추가	제3,3조의2, 7,8조	적용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류(문서)입니다. >